

## 임용유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알림

### 1

### 임용유예 신청

- 관련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 임용유예 신청 대상 : 신규채용(공채·경채 무관) 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적용 대상) 채용시험 합격 후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어 교육원 입교 예정인 자  
\*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제출로 등록되며, 「채용후보자등록원서」 **미제출자는 임용포기로 간주**
- (신청 방법)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시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임용유예 신청서 +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 입교 후에는 신청불가**
- 임용유예 기간 :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내에서 임용을 유예 할 수 있으나, 신임교육기간(8개월) 감안, 실질적으로 1년 내외 가능\*
- \* 유동적인 입교일정 감안, 신임교육이 연 2회 실시되는 경우 → '당초 입교일 부터 차차기 입교일' 까지, 신임교육이 연 3회인 경우 '당초 입교일부터 차차차기 입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임용유예 규모 :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청별 채용인원(임용예정 계급별)의 5% 범위 내외 가능
- \* 본청 채용자(경정 공채·간부후보생 등)의 경우,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외 가능
- 임용유예 사유 :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참고사항 >

| 구 분      | 관련 근거                        | 적용 대상                | 신청 절차                                     | 사 유                                   | 기 간                               | 비 고 |          |
|----------|------------------------------|----------------------|---|---------------------------------------|-----------------------------------|-----|----------|
| 임용<br>유예 | 「해양경찰<br>임용규정」<br><대통령령>     | 신규채용<br>경찰공무원        | 채용시험 합격 후<br>채용후보자 등록 시 신청<br><신임교육 입교 前> | ① 병역복무<br>② 학업<br>③ 질병                | ④ 임신·출산<br>⑤ 그 밖에<br>부득이 인정       | 2년  | 임용<br>권자 |
| 차기<br>입교 | 「해양경찰<br>교육원 학칙」<br><교육원 예규> | 교육원에서<br>교육 중인<br>학생 | 교육 중<br>사유 발생 시 신청<br><신임교육 입교 后>         | ① 질병<br>② 천재지변,<br>교통사고 등<br>③ 가족사망 등 | ④ 추가<br>합격통보*<br>⑤ 그 밖에<br>정당한 사유 | 2년  | 교육<br>원장 |

\* **추가합격통보**를 받고 입교일로부터 7일 이내 입교 불가 시 **차기입교자**로 분류될 수 있음

## 2

## 주요 임용유예 상세 요건

### □ 병역복무를 위한 임용유예 : 제1호 및 제5호 적용

- 제1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 구분       | 주요 내용   |
|----------|---|
| 상세<br>요건 | <p>① 군 未필자(「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자)가 ②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에 ③ 「병역법」상의 의무복무*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단기 복무장교·부사관 포함)를 시작하는 경우</p> <p>* 현역병 입대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보충역</p> |
| 효과       | <p>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병역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하지 아니함(「경찰공무원법」 제12조 제4항)</p> <p>* 제대 후에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이 그대로 유효하여, 학업의 계속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 신청 가능</p>                           |

- 제5호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분       | 주요 내용  |
|----------|--|
| 상세<br>요건 | <p>① 병역법상 의무복무자가 병역복무 도중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p> <p>② 「병역법」이 아닌, 「군인사법」에 따른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同 군 복무 중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p> <p>* 군 장학생 출신의 장교복무, 학사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군 복무</p> |
| 효과       | 위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  |

### □ 학업의 계속을 위한 임용유예 : 제2호 적용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2년) 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임용유예를 인정할 학업의 진행 정도) 적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상세 요건 | <p>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인 자*로 ② 그 학업의 계속**을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p> <p>*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은 임용유예 불가하며, 새롭게 대학·대학원(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불가,</p> <p>** 휴학·어학연수 시 학업의 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임용유예 해제</p> <p>②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당연 허용</p> |
| 효과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하는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에 산입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 가능  |

## □ 장기요양(6개월 이상)이 필요한 질병을 위한 임용유예 : 제3호 적용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

## □ 임신·출산을 위한 임용유예 : 제4호 적용

- 임신확인서 및 출산(예정)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 3 임용유예 심사 기준

❖ 임용유예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결과는 입교일 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 심사기준(인원조정 기준)

- 본청·지방청별 채용인원(임용예정 계급별)의 5% 초과하여 **임용유예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임용유예 허용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현장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외로 허용 가능

## 4 임용유예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임용유예 신청서(서식 1)」와 함께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조항           | 내 용                        | 증빙서류  |
|-----------------|----------------------------|---|
| 제1호<br>(또는 제5호) | 병역복무 사유 임용유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입대 전</u> 또는 <u>복무 중</u>에는 '입영 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 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li> <li>② <u>전역 후</u>에는 병역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제출</li> </ul>                     |
| 제2호             | 학업의 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학·휴학·재적증명서 등 지금의 학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li> <li>② 졸업학점과 현재까지 이수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함께 제출</li> </ul> <p>* 현재 휴학 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하여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p> |
| 제3호             |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다는 진단서   |
| 제4호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등   |
| 제5호             | 기타 그 밖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득이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 **연장** : 임용유예 중인 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임용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임용유예 연장 신청(다른 사유로 추가 신청 포함)

○ 임용유예 연장(다른 사유로 인한 추가 신청 포함)이 가능한 경우

- ▶ 현재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기존 6개월 정도 임용유예(학업·출산·질병 등)를 한 자가 다른 사유로 연장 및 추가신청을 원하는 경우(최대 기간인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 고려 필요)

○ 임용유예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2호부터 5호까지에 따라 임용유예를 1년 신청하여 그 기간이 끝나가는 자
- ▶ 이미 1년 임용유예를 한 경우, 남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에 신임교육을 마치고 임용까지 해야 하므로 연장 불가

□ **철회** : 임용유예 중인 자는 임용유예 사유 소멸 즉시, 또는 임용 유예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철회 신청서' 제출

- ▶ 철회 후 차기 신임교육 일정에 따라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취소**

○ (임용유예 취소) 임용유예 목적 외 사용 적발, 채용후보자 명부 삭제 사유를 제외한 범죄 행위 적발, 기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용후보자 명부 삭제)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또는 「해양경찰청 임용규정」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교육 입교 및 대기

### □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임용유예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대상자는 신임교육 입교를 위해 대기

- ▶ 임용유예가 소멸한 때에 **입교 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임용유예자는 채용후보자 신분을 가지므로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기준 적용

## 참고

## 유의사항 및 Q&A

Q.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학업의 계속,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6개월 이상),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와 함께 임용유예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신청의 사유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추후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임교육 등 일정을 고려하여 심사

Q.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을 위해 유예 신청한 경우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임교육 일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약 1년 내외의 기간 만큼 임용유예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수해야 할 학기가 남았다면, 임용 후 연수휴직을 통해 학업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다만,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해양경찰청에서 선발하는 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인력운용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임용유예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초임 발령일이 늦춰지는 만큼 당연히 재직기간을 반영하는 인사(승진, 전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최종 합격 후 대학원 진학 등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유예 승인이 어렵습니다.

Q.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 적용 되는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복무자의 경우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징집·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위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대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보충역 등의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을 말합니다.

Q. ROTC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병역 의무복무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한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에는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경찰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의무 복무기간은 공무원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제가 군 장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군 입대 전에 합격하고 군 복무를 사유로 7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지요?

A. 대학교 재학 중에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군 장학생의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계산에 포함되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용유예 5호(기타 부득이한 사유) 적용>

Q. 가정 주부입니다.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 할 수 있나요?

A.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과 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육아를 위해서는 임용유예가 불가하며, 임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Q. 현재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올해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 동안 임용유예가 가능하나요?

A.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이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 시, 남은 군 복무기간이 5년인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여 군 복무기간이 있으므로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5호(기타 부득 이한 사유) 적용>

Q.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년에 군에 다녀와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임용유예 기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A.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승인되나, 「병역법」상의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군 복무 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다시 임용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1호 적용(징집·소집) ○ + 임용유예 2호 적용(학업의 계속) ○>

다만, 임용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한학기가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사이버 수업 중입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학기 재학 중이므로 임용유예 신청 사유는 되나, 학교에 따라 사이버 강의 활용·야간수업 전환 등 충분히 임용 후에도 학업을 완료 할 수 있을 경우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졸업 시까지 남은 학기가 1학기(6개월)인 경우 임용유예는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까지 가능한가요?

A.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1학기만 남은 상황에서 그 이상의 기간인 1년을 임용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임용유예가 될 소지가 있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6개월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Q.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A.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용유예 기간은 유예사유(학업의 계속)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방송통신대 재학생의 경우에도 임용유예가 가능한지?

A. 학업의 계속에 따른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해 학교 출석을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정기간 임용을 유예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부분 기간 동안 출석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이 학업의 계속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어 임용유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야간대학의 수업은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Q.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용유예 제도의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즉시 복학하여 학업을 진행해야 합니다.